

교원 윤리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16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1/3

2011.12.30.제정 2016.09.01.개정 2022.12.20.개정 소관부서: 교무처

제 1 장 대학에 대한 윤리

- 제1조(교원의 사명)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.) 교원은 대학의 건학 이념과 학훈, 교육 목표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여야 한다.
- **제2조(기본적 의무)** ① 교원은 학교법인 화신학원 정관 및 본교의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한다.
 - ② 교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며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.
- 제3조(명예와 자산보호의무) ① 교원은 개인의 기본권과 학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한도에서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 - ② 교원은 학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며,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4조(직무상 취득한 정보누출금지) 교원은 직무상 습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아야 한다.
- **제5조(직위남용금지)** 교원은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발언,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**제6조(상호존중의무와 차별금지)** ① 교원은 학교 내 다른 교원이나 직원 및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교원은 학교구성원의 성별・종교・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7조(성희롱금지) 교원은 학교 내 다른 교원이나 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(겸직금지) ① 교원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
 - ② 총장의 허가를 얻어 타 기관의 비상근 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교육과 연구의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.
- **제9조(협력의무)** ① 교원은 입시업무 등 학사행정업무를 비롯한 학내의 사업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.
 - ② 교원은 동료 교원 및 직원을 존중하며, 상호 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졸업생에 대한 응대) 교원은 졸업생 및 재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여야 한



교원 윤리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16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2/3

다.

제 2 장 교육자로서의 윤리

- 제11조(강의내용 및 공정한 학사관리 의무) ① 교원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.
 - ② 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적합한 내용이여야 한다.
 - ③ 교원은 성적평가에 있어 공정을 기하고, 자신의 강의평가 결과에 유리하도록 학생에게 개인적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- 제12조(학생지도) ① 교원은 학생이 기본교양과 전문능력,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 야 한다.
 - ② 교원은 학사지도, 진로지도, 취업지도, 생활지도 등을 위해 학생면담에 성실하게 정기적으로 응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09.01.>
- 제13조(교육자로서의 모범) 교원은 공사의 구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스승으로서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품위 있는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.
- 제14조(학생의 인격존중) ① 교원은 교육 및 연구지도에 있어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학습을 지원한다.
 - ② 교원은 권위적인 자세로 학생을 대하지 아니하며, 학생에 대해서 그 지위를 이용한 인 권침해를 하지 않는다.
- 제15조(능력개발의 의무) 교원은 자신의 교육 및 학생지도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신기술 및 지식을 연마하고 수업의 내용 및 방법을 개선하며, 학생지도 및 취업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.<개정 2016.09.01.>

제 3 장 연구자로서의 윤리

- 제16조(연구자로서의 의무) ① 교원은 창의적인 연구에 지속적으로 정진하여야 한다.
 - ② 교원은 타인의 지적재산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7조(연구사업의 신고와 공개의무) ① 교원은 연구책임자 혹은 이와 유사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, 학교를 통해 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교원은 교육・연구 활동에서 학교의 자산을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특허나 발명 또는 발견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소유권의 귀속은 학교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한다.
- 제18조(연구비 관리) 교원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



교원 윤리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16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3/3

용하여야 한다.

- 제19조(생명유리존중의무) 교원은 연구사업을 수행할 때 생명유리를 존중하여야 한다.
- **제20조(피연구자의 권리보호의무)** 교원은 연구사업을 수행할 때 피연구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여야 한다.
- **제21조(연구업적 평가자로서의 의무)** 교원은 타인의 연구업적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해 야 한다.
- 제22조(연구업적 보고자로서의 의무) 교원은 자신의 연구업적을 보고할 때 제반 규정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대외 활동에 관한 윤리

- 제23조(사회적 평가를 위한 노력) 교원은 스스로의 사회적 평가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해서도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4조(교외활동) 교원은 사적으로 행동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할 때에 대학이나 부설기 관을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
제 5 장 보칙

제25조(윤리의무의 미이행) 총장은 교원윤리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교원에게 규정 미이행 2회 시 '주의' 조치, 3회 시 '경고' 조치, 4회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징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규정과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. 단, 미이행 누적기간은 교원의 임용기간으로 한다.<신설 2022.12.20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